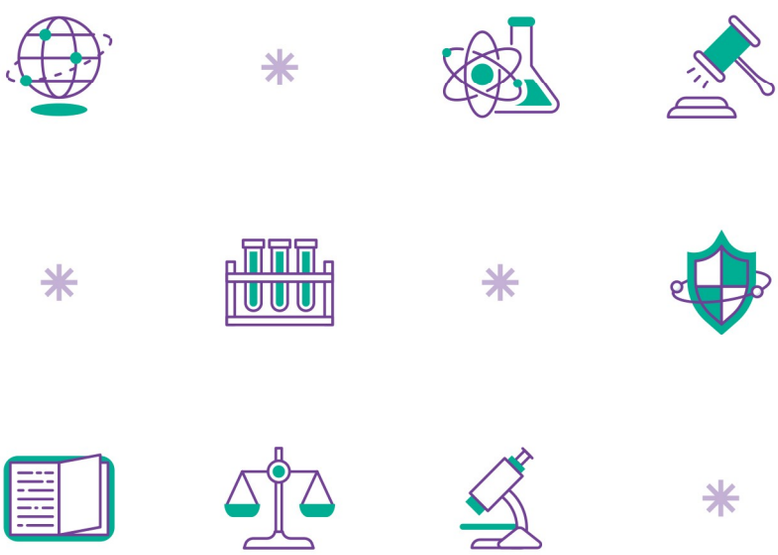
별권 2

# 국가연구개발사업
# 기술료 제도 매뉴얼

2026. 07.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Ministry of Science and ICT

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
Korea Institute of S&T Evaluation and Planning

CONTENTS

# 목 차


**제1장 기술료 제도의 개요 ····· 1**

1. 정의 ····· 1
2. 목적 ····· 1
3. 근거 ····· 1

**제2장 기술료 제도의 운영 ····· 2**

1. 운영체계 ····· 2
2. 기술료의 징수 ····· 3
3. 정부납부기술료 ····· 3
4. 기술료 등의 감면 ····· 4
5. 기술료의 사용 ····· 4

**제3장 정부납부기술료 세부 기준 ····· 5**

1.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····· 5
2.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기준 ····· 5
3.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기간 ····· 6
4.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····· 6
5.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수단 ····· 6
6. 관련 서식 ····· 6

**[부록] 연구개발과제협약 시 기술기여도 산정 및 검증 가이드라인 ····· 7**

# Ⅰ 기술료 제도의 개요

## 1. 정의

- 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) 연구개발성과를 실시(연구개발성과를 사용·양도·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)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

## 2. 목적

-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이전·사업화를 촉진하여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 국익에 기여하고, 연구개발 재투자와 연구자들의 연구의욕 고취 등을 통해 기술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

>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→ 연구개발성과 → 기술이전·사업화
> → 기술료 징수 → 연구개발 재투자 및 연구원 보상

## 3. 근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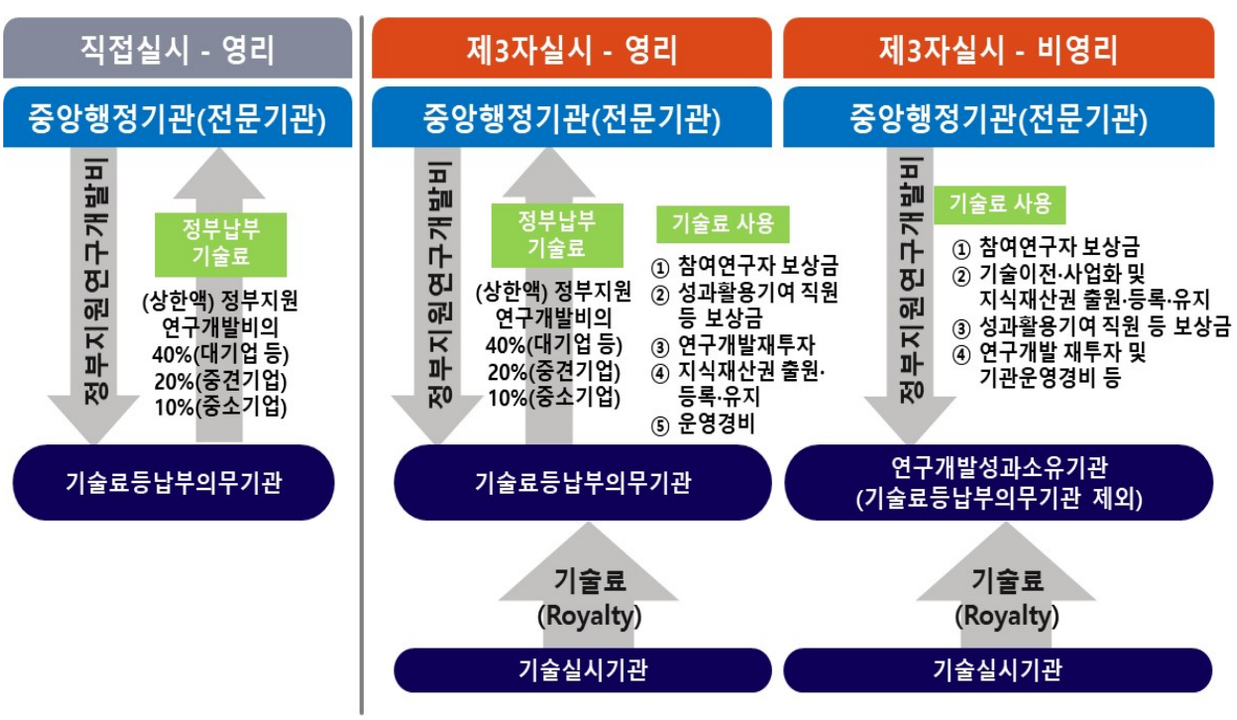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18조(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)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38조(기술료의 납부), 제39조(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), 제40조(기술료 등의 감면), 제41조(기술료의 사용)

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

# Ⅱ 기술료 제도의 운영

## 1. 운영체제

- **기술료 제도**는
  -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, 기술료 및 기술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**①기술료의 징수(이 경우, 기술료는 현금 또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한 방식으로 징수 가능)**,
  -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(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)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**②기술료 등의 납부(이하 "정부납부기술료")**,
  -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참여 연구자 및 성과활용 기여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,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, 지식재산권의 출원·등록·유지(지식재산권의 포기 등에 필요한 경비 포함), 운영경비 등에 사용하는 **③기술료의 사용**으로 구분




[그림 1] 기술료제도 운영체제

## 2. 기술료의 징수

- **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**
  -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를 허락한 경우,
    -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,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 계약을 통해 기술료를 징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「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」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)를 제출

## 3. 정부납부기술료

- **「상법」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**
  - 제3자실시를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
    -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(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)의 규모의 따라 기술료 징수액의 2.5%(중소기업), 5%(중견기업), 10%(대기업 등)를 납부토록 하고
    - 납부상한액은 실사용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각각 10%(중소기업), 20%(중견기업), 40%(대기업 등)로 함

정부납부기술료(제3자실시) = 기술료 징수액* × 요율**

* 기술료 징수액: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실시기관으로부터 받는 금액
** 요율: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규모에 따라 납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

  -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
    -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(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)의 규모의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(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)와 기술료율 2.5%(중소기업), 5%(중견기업), 10%(대기업 등)를 곱하여 납부토록 하고
    - 납부상한액은 실사용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각각 10%(중소기업), 20%(중견기업), 40%(대기업 등)로 함
    - 매출액 보고는 직접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. 단,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납부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려는 뜻을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리는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(혁신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)

정부납부기술료(직접 실시) =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* × 기술기여도**
(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) × 요율***

* 수익: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로 발생하는 매출액
** 기술기여도: '수익(매출액)' 기준에 따른 '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한 제품이 점유하는 비율'과 '전체 연구개발활동 중 정부 R&D투입이 차지하는 비중'을 고려하여 '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으로 정한 비율'
*** 요율: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규모에 따라 납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

## 4. 기술료 등의 감면

- **기술료 징수액 또는 납부액의 감면을 함에 있어**
  -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
    -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연구개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,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때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기술료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,
  - 중앙행정기관의 장은
    -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되거나, 사회적·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하거나,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등에 대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

## 5. 기술료의 사용

- **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**
  - 제3자실시를 통해 징수한 기술료에서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
    -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및 성과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,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, 지식재산권의 출원·등록·유지(지식재산권의 포기 등에 필요한 경비 포함), 운영경비 등에 사용
- **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을 제외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**
  - 제3자실시를 통해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(정부지분기술료)에 대해 다음의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
    - 연구개발과제 참여 연구자 보상금: 정부지분기술료의 60% 이상
    - 기술이전·사업화* 및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·유지(지식재산권의 포기 등에 필요한 경비 포함): 정부지분기술료의 15% 이상
      * 기술이전 · 사업화 경비는 기술료가 징수된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경비뿐만 아니라, 향후 기관의 기술이전 ·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 가능
    - 성과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: 정부지분기술료의 10% 이상
    - 연구개발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: 나머지 금액

# Ⅲ 정부납부기술료 세부 기준

## 1.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

- **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*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**
  *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,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·지방공사·지방공단, 상기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

## 2.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기준

- **제3자 실시의 경우, 기술료 징수액 기준으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 연구개발비 상한 적용**
- **직접 실시의 경우,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에 기술기여도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 연구개발비 상한 적용**

● 정부납부기술료는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에 따라 모든 부처가 기업 유형에 따라 하기와 같이 적용

| 분류* | | 부과기준 | | 기술료율 | 기술료 납부 상한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제3자 실시 | 중소기업 |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 | | 2.5% |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% 이하 |
| | 중견기업 |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 | | 5% |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% 이하 |
| | 대기업·공기업 |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 | | 10% |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% 이하 |
| 직접 실시 | 중소기업 |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| 기술기여도 (과제협약) | 2.5% |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% 이하 |
| | 중견기업 |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| 기술기여도 (과제협약) | 5% |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% 이하 |
| | 대기업·공기업 |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| 기술기여도 (과제협약) | 10% |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% 이하 |

*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함

## 3.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기간

- **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**
- **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**

- 천재지변,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, 납부기한 변경 가능

## 4. 정부납부기술료 감면

- **국가안보, 사회적·경제적 긴급한 상황, 경영 악화 등 감면 조건에 해당될 경우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**
- **기타 감면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**

## 5.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수단

- **현금, 신용카드, 약속어음 등 부처의 재량에 따라 납부 방법 지정 가능**

## 6. 관련 서식

- **기술실시계약 보고서,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, 기술실시 결과 보고서, 기술료등 납부고지서, 기술료 사용 실적 보고서 등은 제공하는 공통서식을 사용하고, 기술료 감면 신청서 등은 중앙행정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서식 마련 가능**

## [부록]

# 연구개발과제협약 시 기술기여도 산정 및 검증 가이드라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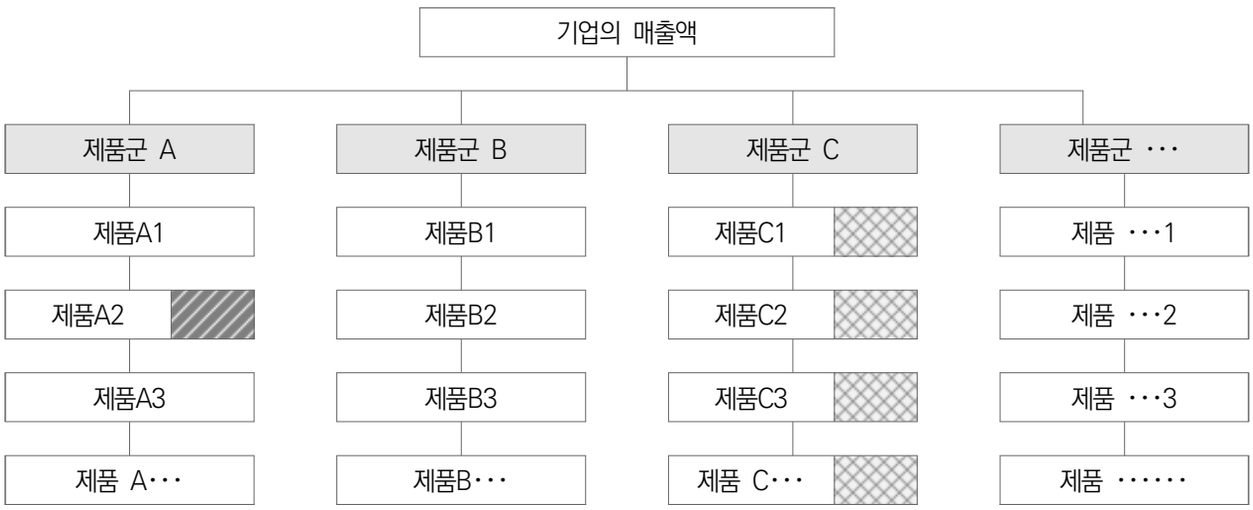
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**직접 연구개발성과 실시로 인한 수익**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여, **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**은 **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술기여도**를 **연구개발과제협약 단계**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**협약으로 정하도록 함**으로써, 협약 단계에서 논의를 위한 **'매출액 기준' 및 '기술기여도'**에 대한 **가이드라인**을 마련함

- 납부 대상
  - 국가연구개발비의 지원을 통한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고 있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 후 수익이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
- 납부 기준(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제39조)
  -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,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로 발생하는 '수익'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인 '기술기여도'와 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'요율'을 곱한 금액을 납부
    * **'기술기여도(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)'**는 수익(매출액)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이 활용된 제품의 비율과 전체 연구개발활동 중 정부R&D비중 등을 고려하여 산정

**정부납부기술료** = ①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
× ② 기술 기여도(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)
× ③ 요율 (시행령)

### 매출액 기준에 따른 기술기여도 산정 방법(예시)

- 영리법인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매출이 발생하였을 경우, 다음과 같은 구조로 기업 전체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침




**1.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로 제품A2의 매출액이 발생(신규 제품)하였거나 증가(기존 제품 개선 등)한 경우**

ⅰ) 제품A2의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

- **(매출액 기준)** 전문기관은 기업의 재무제표, 매출전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에서 '제품 단위별 점유비율'이 산정 가능한지 확인하고,
  - 기술료 산정시 매출액은 **제품A2에 대한 매출액** 적용
- **(기술기여도)** 제품A2에 대한 총사업비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등을 감안하여 기술기여도 협약 실시

**• 기술 기여도** = $\dfrac{\text{(정부지원 연구개발비}^{*})}{\text{(총사업비}^{**})}$
(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)

*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: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의 총 사업비 중 정부 지원분
** 총사업비 :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의 Σ(정부지원 연구개발비 + 민간현금 + 민간현물)

ii) 제품A2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나 제품군A의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

- **(매출액 기준)** 전문기관은 기업의 재무제표, 매출전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에서 '제품군별 점유비율'이 산정 가능한지 확인하고,
  - 기술료 산정시 매출액은 **제품군A에 대한 매출액** 적용
- **(기술기여도)** (제품군에서의 제품A2의 매출액 기여율)과 (제품A2에 대한 총사업비) 등을 감안하여 기술기여도 협약 실시

$$\text{• 기술 기여도} = \frac{\text{제품A2(예상 매출액}^{*})}{\text{제품군A(예상 매출액)}} \times \frac{\text{(정부지원 연구개발비}^{**})}{\text{(총사업비}^{***})}$$

(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)

* 예상매출액 : 정부R&D사업(총사업비)의 성과실시로 인한 예상 매출액
**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: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의 총 사업비 중 정부 지원분
*** 총사업비 :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의 Σ(정부지원 연구개발비 + 민간현금 + 민간현물)

iii) 제품A2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나 기업의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

- **(매출액 기준)** 전문기관은 세무조정계산서 등에서 기업매출액 확인하고,
  - 기술료 산정시 매출액은 **기업 전체 매출액** 적용
- **(기술기여도)** (기업매출액에서 제품A2의 매출액 기여율)과 (제품A2에 대한 총사업비) 등을 감안하여 기술기여도 협약 실시

$$\text{• 기술 기여도} = \frac{\text{제품A2(예상 매출액}^{*})}{\text{기업(예상 매출액)}} \times \frac{\text{(정부지원 연구개발비}^{**})}{\text{(총사업비}^{***})}$$

(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)

* 예상매출액 : 정부R&D사업(총사업비)의 성과실시로 인한 예상 매출액
**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: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의 총 사업비 중 정부 지원분
*** 총사업비 :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의 Σ(정부지원 연구개발비 + 민간현금 + 민간현물)

**2.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로 제품군C에 공통으로 적용되어 매출액에 기여(공정 개선 활동 등)한 경우**

ⅰ) 제품군 C의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

- **(매출액 기준)** 전문기관은 기업의 재무제표, 매출전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에서 '제품군별 점유비율'이 산정 가능한지 확인하고,
  - 기술료 산정시 매출액은 **제품군C에 대한 매출액** 적용
- **(기술기여도)** (제품군C 매출액에서의 해당 기술개발과제의 매출액 기여율)과 (제품군C에 대한 총사업비) 등을 감안하여 기술기여도 협약 실시

$$\text{• 기술 기여도} = \frac{\text{해당기술(예상 매출기여액*)}}{\text{제품군C(예상 매출액)}} \times \frac{\text{(정부지원 연구개발비**)}}{\text{(총사업비***)}}$$

(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)

* 예상 매출기여액 : 정부R&D사업(총사업비)의 성과실시로 인한 예상 매출액
**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: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의 총 사업비 중 정부 지원분
*** 총사업비 :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의 Σ(정부지원 연구개발비 + 민간현금 + 민간현물)

ⅱ) 제품군C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나 기업의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

- **(매출액 기준)** 전문기관은 세무조정계산서 등에서 기업매출액 확인하고,
  - 기술료 산정시 매출액은 **기업 전체 매출액** 적용
- **(기술기여도)** (기업 매출액에서의 해당 기술개발과제의 매출액 기여율)과 (제품군C에 대한 총사업비) 등을 감안하여 기술기여도 협약 실시

$$\text{• 기술 기여도} = \frac{\text{해당기술(예상 매출기여액*)}}{\text{기업(예상 매출액)}} \times \frac{\text{(정부지원 연구개발비**)}}{\text{(총사업비***)}}$$

(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)

* 예상 매출기여액 : 정부R&D사업(총사업비)의 성과실시로 인한 예상 매출액
**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: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의 총 사업비 중 정부 지원분
*** 총사업비 :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의 Σ(정부지원 연구개발비 + 민간현금 + 민간현물)

### 기술기여도 작성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[별지 제2호 서식]에 따른 협약 시 기술기여도는 **연구개발성과의 실시에 따른 확인 가능한 수익(매출액) 기준**을 설정하고 **이에 따른 기술기여도**를 기입

> 제17조(기술료 등의 징수·납부·사용) 기술료의 징수·감면·사용, 기술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·감면에 관하여는 법 제18조, 영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과 법 제18조 또는 영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> ②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와 관련하여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여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.

(단위: %)

| 구분 | 매출액발생 1년차 | 매출액발생 2년차 | 매출액발생 3년차 | 매출액발생 4년차 | 매출액발생 5년차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기술 기여도 | | | | | |

- (예시) **기술기여도**는 수익(**매출액) 기준**에 따른 **매출액 기여율**과 **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통한 기술기여도**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사항을 반영하여 적용

① **(매출액 기여율)** 기술료 산정 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로 인한 성과로 발생하는 매출액이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산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**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제시된 매출액 기준과 매출액 기여율*** **적용**

* 정부납부기술료 산정 시 매출액 기준에 따른 매출액 기여율**은 연구개발과제협약 사항 반영

**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여율은 각 년도 또는 평균 등 협의에 의해 정함

(단위 : 백만원, %)

| 매출액 기준 | 매출액 기여율 산정기준 | 매출액발생 1년차 | 매출액발생 2년차 | 매출액발생 3년차 | 매출액발생 4년차 | 매출액발생 5년차 | 평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기업 (또는 제품군) | 예상 총매출액(A) | | | | | | |
| 개발기술 제품 |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(B) | | | | | | |
| 매출액 기여율(협약) (C=(B/A)×100) | | | | | | | |

② **(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통한 기술기여도)**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**총사업비 등을 반영하여** 제시하되, **과제 종료 후 정산·환수 등을 반영**하고 **연구개발투자계획에 따른 실적 등 확인**하여 재산정 및 적용 가능

|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통한 기술기여도 산정기준 | 협약 시 | 과제 종료 후 |
|---|---|---|
| 총사업비(A) | | 실사용 적용 |
| 정부지원 연구개발비(B) | | 실사용 적용 |
|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술기여도 (D=(B/A)×100) | 협약<br>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술기여도 | 확정<br>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여도<br>(재산정하여 반영) |

③ **(기술기여도 협약)**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**(수익 기준), (매출액 기여율)**과 **(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통한 기술기여도)*를 협약서에 명시**토록 하고, 이를 기준으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 납부액 산정 시 반영

*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통한 기술기여도는 납부액 산정 시 과제 종료 후 정산·환수 등을 반영하여 재산정

● **매출액 검증절차**

- 전문기관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매출액과 기여도를 검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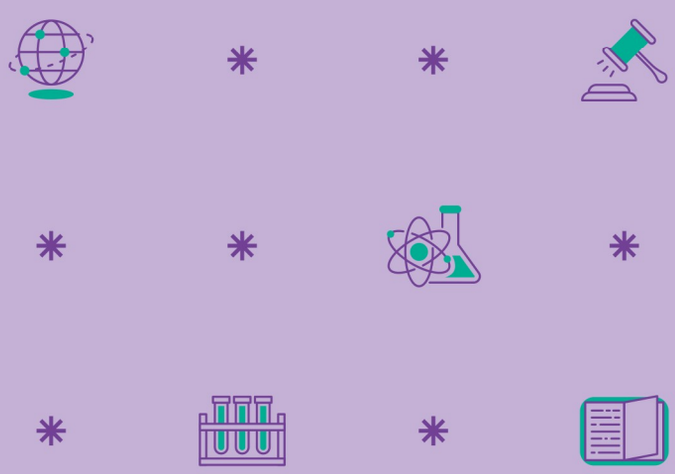
1. **(매출액 확인)** 전문기관은 협약 시 제시된 제품 단위 또는 제품군 단위 등 매출액 기준이 재무제표, 매출전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되는지 확인
2. **(기여도 확인)** 전문기관은 **매출액 기준**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물의 매출기여율, 정부지원 연구개발비, 총사업비 등을 확인하고 이를 감안하여 기여도 검증
3. **(현장 검증)** 전문기관은 자체 또는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영리법인이 제출한 기술료 납부에 관련된 증빙자료에 대한 서류 검증을 실시하고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영리기관을 방문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음
4. **(검증단 구성)** 전문기관이 현장 검증을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회계전문기관 및 해당 기술분야 전문가로 검증단을 구성함

● **기타**

- 상기 가이드라인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관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

# 국가연구개발사업
# 기술료 제도 매뉴얼

2026. 07.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Ministry of Science and ICT

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
Korea Institute of S&T Evaluation and Planning